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4조의3제1항”을 “제4조의3 제1항(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쟁력확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력확보”로, “무역피해사실”을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또는 통상피해사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담기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역조정계획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무역조정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기업 : 법 제15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의 기업 :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경쟁력확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력확보”로, 같은 뒤쪽 중 “입증서”를 “입증서 또는 통상피해사실입증서”로 하며, 같은 뒤쪽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담기관”으로 하며, 같은 뒤쪽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담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무역피해사실입증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무역피해사실입증서”로 하며, 같은 뒤쪽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수행계획서”를 “수행계획서 1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담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담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①정리번호	②관리번호	③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④한글			⑥법인등록번호				
		⑤영문							
	성명(대표자)	⑦한글			⑨생년월일				
		⑧영문							
	⑩사업자등록번호								
	⑪설립 연월일				업종	⑫업종명			
						⑬업종코드			
	소 재 지	⑭본사							
		⑮사업장							
	연 락 처	⑯전화번호			⑰E-mail				
		⑱홈페이지주소			⑲FAX				

신청 현황	근로자수	⑳사무직 명	㉒자산총액 백만원	㉓자본금 백만원
		㉑생산직 명		
	주생산품목	㉔한글		
		㉕영문		
	㉖통상피해 내용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입증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3. ⑫란은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을 기재합니다.
4. ⑬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기재합니다.
5. ⑳과 ㉑란은 최근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제외합니다)의 수를 합하여 3으로 나눈 값을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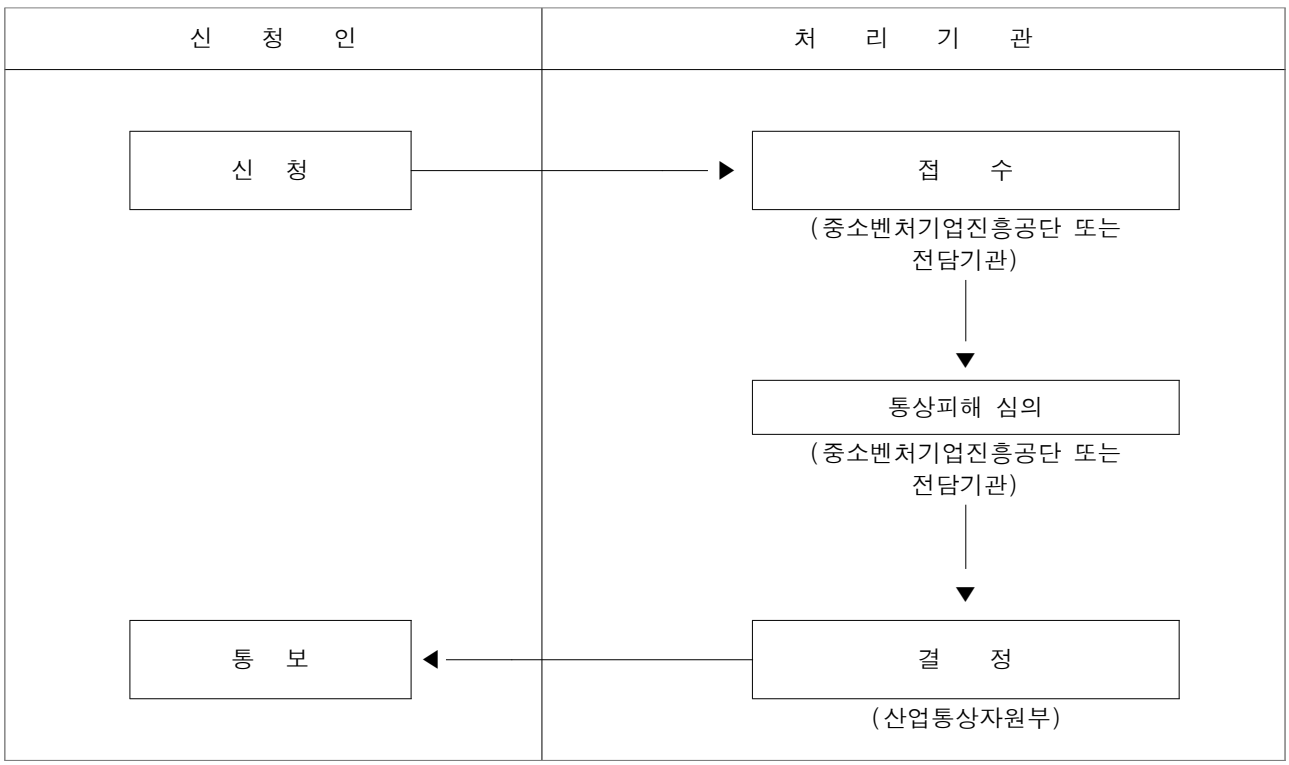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통상피해지원기업 [ ]지정 [ ]부지정 통지서

지정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신청일		
지정 또는 부지정 사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210㎜×297㎜[백상지 80g/㎡]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융자지원신청서 ([ ] 신규 [ ] 추가)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정리번호	②관리번호	③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④한글		⑥법인등록번호						
		⑤영문								
	성명(대표자)	⑦한글		⑨생년월일						
		⑧영문								
	⑩사업자등록번호									
	⑪설립 연월일			업종	⑫업종명					
					⑬업종코드					
	소 재 지	⑭본사								
		⑮사업장								
	연 락 처	⑯전화번호		⑰E-mail						
		⑱홈페이지주소		⑲FAX						

신청 현황	근로자수	⑳사무직 명	㉒자산총액 백만원	㉓자본금 백만원
		㉑생산직 명		
	신청금액	㉔시설자금 백만원	소요금액	㉖시설자금 백만원
		㉕운전자금 백만원		㉗운전자금 백만원
	㉘담보 또는 보증	[ ] 신용 [ ] 부동산 [ ] 기타 [ ] 보증 ([ ] 신용보증기금 ( )지점 [ ]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점)		
	㉙희망대출 기관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은행 지점 [ ] 기타(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1부 2.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1부 3.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1부 4. 융자금의 사용계획서(전담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 된 서식을 말한다) 1부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3. ⑫란은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을 기재합니다.
4. ⑬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기재합니다.
5. ⑳과 ㉑란은 최근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제외합니다)의 수를 합하여 3으로 나눈 값을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담기관
신 청 →	접 수
	▼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적합성 검토
	▼
	융자지원 검토
	▼
← 통 보	지원결정

무역조정계획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정리번호	②관리번호	③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④한글	⑥법인등록번호	
		⑤영문		
	성명(대표자)	⑦한글	⑨생년월일	
		⑧영문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공장등록번호	
	⑫설립 연월일		업종	⑬업종명
				⑭업종코드
	소 재 지	⑮본사		
		⑯사업장		
	연 락 처	⑰전화번호	⑱E-mail	
		⑲홈페이지주소	⑳FAX	

1. 계획의 개요

㉑무역피해의 개요 및 무역조정계획 추진의 목적			
㉒시설 설치장소		㉓이행 기간	201 년 월 ~ 201 년 월
사업추진 계획요약	㉔기술(서비스) 수급계획		
	㉕인력수급 계획		

사업추진 계획요약	㉖설비추진 계획	
	㉗판로확보 계획	
	※ 무역조정계획 이행기간 내 기존 기술과의 연관성, 기존 인력·설비·거래처 활용여부 또는 신규 채용·투자계획·거래처 확보계획 등을 기술	

2. 세부추진계획

가. 무역조정 계획상의 생산제품 (상품 및 서비스) 개요 : 기존 또는 신규	㉘제품명 (상품 또는 서비스명)	
	㉙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㉚기술 (서비스) 품질경쟁력	- 대체·경쟁제품과의 차별성 -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㉛상품 (서비스) 개발계획 및 생산/증산 계획	

가. 무역조정계획상의 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 개요 : 기존 또는 신규	㉜기대효과(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고용, 자원활용 등)	
	※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은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위주로 하되 핵심기술(서비스)을 기술	

나. 계획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 영업계획

시장성	㉝판매형태	주문판매(%),시장판매(%),임가공(%),(내수 %, 수출 %)						
	㉞경쟁현황	제품명(상품 및 서비스)	시장규모	국내생산업체수	주요기업체명		귀사의 동업계 지위		경쟁상태
					1순위	2순위	시설능력	시장지위	

※ 시장규모는 금액 또는 물량기준으로, 동업계 지위는 상・중・하로, 경쟁상태는 과당・보통・ 독점으로 기재

㉟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품목명(상품 및 서비스)	당해연도(T년)				1차년도(T+1년)		2차년도(T+2년)		3차년도(T+3년)	
		생산능력(수량・금액)	판매처(업체명)	판매액		판매액		판매액		판매액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합 계										

* T : 기준년도
※ 4사분기 신청업체의 경우, 차기년도가 1차년도에 해당함.
※ 수출금액은 원화로 환산표기하고 추정기준환율을 기재함(1$: 원)
※ 주요품목(상품 및 서비스)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 합산기재함

다. ㊱설비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시설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VAT제외)	제작사(국산/외산)	설치시기

※ 필요시 별지작성

라. 자금 조달계획	㊲총소요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시설자금	기계시설		
			시험검사설비		
			기 타		
		운전자금	기술개발비용		
			원·부자재구입비 및 인건비등		
			기 타		
		합 계			

	㊳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소요금액		시설		
		조달계획	자체자금	운전		
			중진공 차입금	시설		
			은행자금 등 기타	운전		
				시설		
				운전		
				시설		
				운전		

마. ㊴경영기술 상담지원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추진목적	
	추진시기	
	희망분야 및 요구수준	
	※ 상담지원 희망분야 및 요구수준은 구체적으로 기재	

	구 분		직전년도 (T-1년)	당해연도 (T년)	1차년도 (T+1년)	2차년도 (T+2년)	3차년도 (T+3년)
바. ㊴재무계획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총 자 산					
		자기자본					
	손익계산서	고정부채					
		유동부채					
		매출액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법 인 세					
		당기순이익					
	* T : 기준년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기업의 매출 및 생산 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3. ⑫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기재합니다.
4. ⑬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 소 벤 처 기 업 진 흥 공 단
신 청	▶ 접 수
	▼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검토
	▼
	융자지원 검토
	▼
통 보	◀ 지원결정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통상피해대응계획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정리번호	②관리번호	③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④한글		⑥법인등록번호						
		⑤영문								
	성명(대표자)	⑦한글		⑨생년월일						
		⑧영문								
	⑩사업자등록번호									
	⑪설립 연월일			업종	⑫업종명					
					⑬업종코드					
	소 재 지	⑭본사								
		⑮사업장								
	연 락 처	⑯전화번호		⑰E-mail						
		⑱홈페이지주소		⑲FAX						

1. 계획의 개요

⑳통상피해의 개요 및 통상피해대응 계획 추진의 목적		
㉑이행기간		201 년 월 ~ 201 년 월
사업추진 계획요약	㉒자금조달 - 운용계획	
	㉓원자재 수급계획	

사업추진 계획요약	㉔계획 제품 (상품또는 서비스) 영업 계획	
	㉕경영관리 계획	
	※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기간 내 자금조달 · 운용, 원자재 수급 · 판로 확보계획, 경영관리(신규채용, 투자계획) 등을 기술	

2. 세부추진계획

가. 자금조달 운영계획

㉖총소요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시설자금	기계시설			
		시험검사설비			
		기 타			
	운전자금	기술개발비용			
		원・부자재구입비 및 인건비등			
		기 타			
	합 계				

㉗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소요금액		시설		
	조달계획	자체자금	운전		
		중진공 차입금	시설		
		은행자금 등 기타	운전		
			시설		
			운전		
			시설		
			운전		

나. 원자재 수급계획	*대체 원자재 수급 국가 발굴 또는 국내 수급계획*

다. 계획제품(상품 또는 서비스) 영업계획

시장성	㉘판매형태		주문판매(%),시장판매(%),임가공(%),(내수 %, 수출 %)						
	㉙경쟁현황	제품명 (상품 및 서비스)	시장규모	국내생산업체수	주요기업체명		귀사의 동업계 지위		경쟁상태
					1순위	2순위	시설능력	시장지위	

※ 시장규모는 금액 또는 물량기준으로, 동업계 지위는 상・중・하로, 경쟁상태는 과당・보통・ 독점으로 기재

㉚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품목명 (상품 및 서비스)	당해연도 (T년)				1차년도 (T+1년)		2차년도 (T+2년)		3차년도 (T+3년)	
		생산능력 (수량・금액)	판매처 (업체명)	판매액		판매액		판매액		판매액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합 계										

* T : 기준년도
※ 4사분기 신청업체의 경우, 차기년도가 1차년도에 해당함.
※ 수출금액은 원화로 환산표기하고 추정기준환율을 기재함(1$: 원)
※ 주요품목(상품 및 서비스)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 합산기재함

라. 경영 관리계획	

마. 경영기술 상담지원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추진목적	
	추진시기	
	희망분야 및 요구수준	
	※ 상담지원 희망분야 및 요구수준은 구체적으로 기재	

	구 분		직전년도 (T-1년)	당해연도 (T년)	1차년도 (T+1년)	2차년도 (T+2년)	3차년도 (T+3년)
바. 재무계획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총 자 산					
		자기자본					
	손익계산서	고정부채					
		유동부채					
		매출액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법 인 세					
		당기순이익					
	* T : 기준년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상피해대응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기업의 매출 및 생산 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⑫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3. ⑬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기재합니다.
4. ⑭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담기관
신 청 →	접 수
	▼
	통상피해대응계획 적합성 검토
	▼
	융자지원 검토
	▼
← 통 보	지원결정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관리번호

신청인	②자 격 [ ] 근로자대표 [ ]사업주		
	③성 명		④생년월일
	⑤주 소		
	연 락 처	⑥전화번호	⑦휴대폰번호

기업 개요	⑧상호(명칭)		⑨사업장관리번호
	⑩사업자등록번호		⑪설립 연월일
	⑫소재지		
	연 락 처	⑬전화번호	⑭FAX
	⑮성명(대표자)		⑯근로자수
	업 종	⑰업종명	⑲주생산품목
		⑱업종코드	

⑳기업 피해유형	[ ]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 ]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내용	㉑성 명	㉒생년월일	㉓직종코드			㉔근무기간	㉕피해유형 1.실직, 2.실직예정, 3.근로시간 단축, 4.근로시간 단축예정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 법 제15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①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개업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3. ⑰란은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종목을 기재합니다.
4. ⑱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기재합니다.
5. ㉑란부터 ㉕란까지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㉓란은 부표[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7. ㉕란은 해당하는 피해유형의 번호에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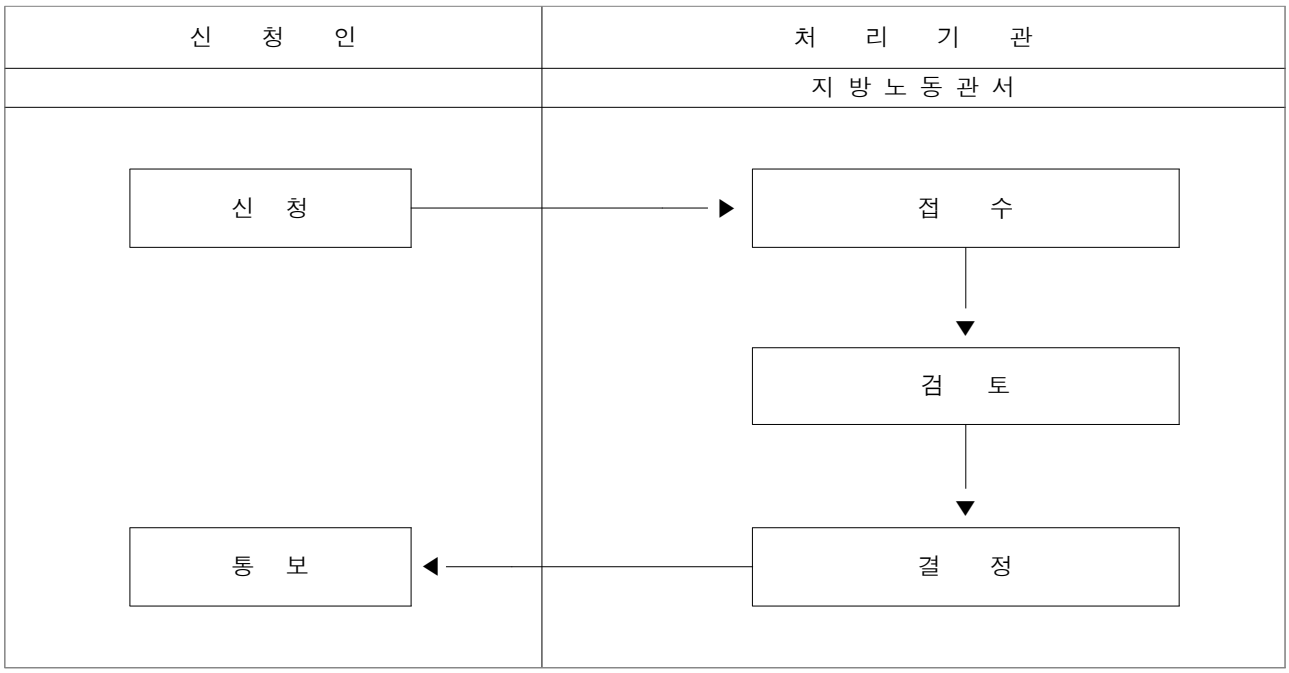

[부표]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개정 2016. 8. 4.>

관리직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금융·보험 관련직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33 보험 관련 영업직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5 학교교사 046 학원강사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052 법률관련 사무직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71 사회복지 전문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073 종교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085 디자인 관련직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095 운송관련 단순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중개인 103 판매원 104 판매 관련 단순직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11 경비 관련직 112 청소 및 가사도우미 관련직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조주사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건설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142 전통건물 건축원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144 석공 및 조적원 145 목공 146 건축완성 관련직 147 건설기계운전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기계 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62 판금 관련직 163 단조원 164 주조원 165 용접원 166 도장원 및 도금원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화학 관련직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192 전공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설비 조작원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정보통신 관련직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가공 관련직
211 식품공학기술자 212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221 환경공학기술자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227 생산 관련 단순직
농림어업 관련직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233 어업 관련직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통상피해지원근로자 [ ]지정 [ ]부지정 통지서

지정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기 업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지정 또는 부지정 사유		
지정인원		신청일

일련번호	통상피해지원근로자		근 무 기 간	피 해 유 형
	성 명	생 년 월 일		1.실직, 2.실직예정, 3.근로시간 단축, 4.근로시간 단축예정
1				
2				
3				
4				
5				
6				
7				
8				
9				
1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210㎜×297㎜[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1.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력확보 ---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또는 통상피해사실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사업자등록증	4. 사업자등록증명원
<신 설>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생 략)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

	신청서 등) ①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상담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에 상담지원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상담지원신청서 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담기관----------.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담기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무역조정계획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무역조정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담기관---.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

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단 또는 전담기관--. 1.·2. (현행과 같음) 3.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업자등록증 ③ (생 략) <신 설>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등록증명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기업 : 법 제15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의 기업 :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